

	글로벌 현장실습 운영 규정	문서번호	MSU-
		제정일자	2016. 4. 11.
		최종개정일자	
		담당부서	기획산학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가 글로벌 현장실습 파견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글로벌 현장실습 파견제도는 재학생들에게 국제 감각과 직무능력을 갖추게 하여 외국기업 또는 해외진출 국내기업 등에 대한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사업범위) 글로벌 현장실습의 사업범위는 교육부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4조(파견자 선발 및 파견기간) ①대학은 학생 선발 등 세부사항에 대해 선발 1개월 전에 공고 한다.

②학기 중에 파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파견기간은 16주 내외로 한다.

제5조(주관부서) 글로벌 현장실습사업 참여 신청은 기획산학처에서 담당하고,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학사지원처에서 주관한다.

제6조(파견대상 선발) ①글로벌 현장실습 참여 학생은 본 대학의 재학생으로서 2학기 이상 등록을 한 자 중 누계평점 3.0/4.5이상이어야 한다.

②비자발급 등 글로벌 현장실습 파견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기타 사업주체(정부기관)가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학생은 파견국 언어능력(공인 어학 성적)등을 평가하여 선발되며, 언어능력 수준은 매년 사업주체(정부기관)에서 요구하는 성적 이상으로 한다.

④학칙에 의해 징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⑤잔여학점을 제외한 졸업사정이 충족되어야 한다.

⑥파견학생은 본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강신청) ①참가학생은 대학의 수강신청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글로벌 현장실습은 전공 및 교양과목 현장수업의 일환이므로 학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속 학과에 개설된 교과목으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글로벌 현장실습 책임교수는 학생들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수강신청에 착오가 없도록 지도하고 확인한다.

제8조(신분유지) ①학생은 파견기간에 재학생 신분으로서의 자격이 유지된다.

②파견기간이 종료된 학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 종료 후 7일 이내에 출입국 확인서와 결과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거점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학생은 글로벌 현장실습 결과보고서를 소속 학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추천 및 결정) 총장은 파견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을 글로벌현장실습 사업주체기관에 추천하며 소관 부처의 심사를 거쳐 참여대상학생으로 결정한다.

제10조(학점인정) ①학생소속 학과는 대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과목별로 성적을 부여하고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학점인정원을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점을 인정한다.

③학생이 파견종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파견기간동안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학점인정 범위는 당해학기 해당학과에서 개설된 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며, 2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⑤글로벌 현장실습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1조(성적평가) ①글로벌 현장실습 성적평가는 학생이 작성한 현장실습 주간 및 결과보고서, 현장실습 출결확인서, 현장실습 과정평가서 등을 토대로 이루어지며 평가 비율은 학과에서 정한다.

②글로벌 현장실습 과정 이수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P 또는 NP로 평가하며,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되, 평점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수한 성적 총점이 60점 이상인 경우 P로 한다.

제12조(학생의 의무) ①글로벌 현장실습 과정 동안 부여된 업무를 성실, 근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글로벌 현장실습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미제출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③글로벌 현장실습기간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학에 알려야 한다.

④글로벌 현장실습기간 중 체류국 법규와 해외 산업체의 사규를 준수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무위반 처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지원금 및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글로벌 현장실습 과정 중 해외 산업체의 복무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무단결근자

2. 고의적으로 글로벌 현장실습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3. 고의적으로 해외실습 산업체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정보 유출 등)를 한 자

4.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제14조(기타) 기타 글로벌 현장실습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